

バロ送金重要事項

バロ送金サービスのお申込み及びご利用に当たっては、次の点にご注意ください。

1. 銀行等が行う為替取引ではありません。

- ・バロ送金は、銀行等が行う為替取引ではありません。
- ・バロ送金は、預金若しくは貯金又は定期積金等を受け入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 ・バロ送金は、預金保険法(昭和 46 年法律第 34 号)第 53 条又は農水産業協同組合貯金保険法(昭和 48 年法律第 53 号)第 55 条に規定する保険金の支払の対象とはなりません。
- ・当社は、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平成 21 年法律第 59 号。以下「資金決済法」といいます。)第 44 条の規定に基づき、東京法務局に履行保証金の供託をしております。
- ・バロ送金利用者は、資金決済法に基づく履行保証金制度によって保護されます。
- ・バロ送金利用者は、資金決済法第 59 条に基づく履行保証金についての権利の実行の手続において、受取人の口座に着金するまでは、送金依頼人である利用者が還付を受ける権利を有します。

2. バロ送金についてご留意いただきたいその他の事項

- ・バロ送金のご利用に当たっては、「利用規約」をよくお読みください。
- ・バロ送金で取り扱う為替取引の額の上限(1為替取引額)は、100 万円です。
- ・お支払いいただいた資金が、ご指定の受領者の口座へ入金されるまでの標準的な期間(標準履行期間)は一営業日です。
- ・バロ送金のご利用に当たって利用者が負担する手数料については、別紙をご覧ください。
- ・異なる通貨間の換算レートは、当社が定めるレートによるものとします。
- ・換算レートの確定時点および適用レートは、送金申込者が入力フォームに必要事項を入力する等、窓口で利用申込手続きを行った時点の当社が公示する送金レートを適用するものとします。
- ・会員登録時に会員カードを発行した場合は、他の人に譲ったり、貸したりしないでください。また、カード発行時に暗証番号をご登録いただいた場合、会員カード番号と暗証番号はご自身で厳重に管理し、第三者へ漏えいすることの無い様にお願いします。
- ・住所、連絡先等登録済みの個人情報に変更があった場合、当社へお知らせください。その場合新たに本人確認資料の提供をお願いする場合があります。

3. 当社は、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に基づき金融 ADR 措置を実施しています。当社サービスに関する苦情・紛争解決のお申出先は次のとおりです。

当社苦情申出先:

株式会社シースクエア EC事業開発部 バロ送金担当
〒160-0022 東京都新宿区新宿1-36-7 新宿内野ビルⅡ2階
TEL:03-3359-0028
電子メール:info@barosend.com

苦情解決申出先:社団法人日本資金決済業協会「お客様相談室」

住所 東京都千代田区神田小川町2-8
三井住友海上小川町ビル5階
TEL: 03-3219-0628

紛争解決申出先:

当社は紛争については、日本資金決済業協会が業務委託をする弁護士会(東京弁護士会・第一東京弁護士会・第二東京弁護士会)の仲裁センター・紛争解決センターとの間で協定書を締結し、同会を通じて紛争解決をはかります。

(連絡先)

[東京弁護士会紛争解決センター]

〒100-0013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 1-1-3 東京弁護士会

TEL 03-3581-0031

[第一東京弁護士会仲裁センター]

〒100-0013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 1-1-3 第一東京弁護士会

TEL 03-3595-8588

[第二東京弁護士会仲裁センター]

〒100-0013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 1-1-3 第二東京弁護士会

TEL:03-3581-2249

4. 為替取引が外国通貨で表示された金額で行われる場合においては当該金額を本邦通貨に換算した金額及びその換算に用いた標準又はこれらの計算方法等

送金資金と受取通貨が異なる場合、本サービスで適用する為替レートの算出は以下のとおりとします。

利用申込者が入力フォームに必須事項を入力する等、利用申し込み手続きを行った時点の韓国 KEB ハナの定める為替レート(TTS)から、0~5%を上乗せした為替レートを算出し、適用します。為替レートの更新は、営業日午前9時から午後6時の間、随時更新します。

5.その他

(1)契約期間は無期限とします。

(2)契約期間の中途での解約時の取扱い

・中途解約手数料(退会手数料)は生じません。利用者の返金対象額が残っている場合はお客様の指示に基づき返金します。

・個別の送金利用契約が満了していない場合で、送金申込みをキャンセルするときは、別途定める送金申込キャンセル手数料が生じます。

(3)為替取引に係る資金の入金の方法

・取扱いのある当社営業所窓口で現金で支払ってください。

(4)為替取引依頼後の当該為替取引に係る資金の状況を確認する方法

・お客様から申込みをいただいた送金取引の進捗状況は、原則としてお客様のご登録のメールアドレス宛にe-mailまたは、携帯電話宛にSMSを送信することにより通知いたします。

(5)暗証番号の設定その他のセキュリティに関する事項

・バロ送金をご利用頂くに当たり、会員カードを発行する場合は、お客様ご自身に暗証番号を設定および登

録して頂くこととなります。ご登録頂いた暗証番号は、当社のデータベースサーバにて管理いたします。なお、ご登録頂いた暗証番号はお客様の責任において厳重に管理および保管してください。

以上

2016年3月25日制定

2016年7月15日改定

(別紙)

本サービス利用にかかる料金は次のとおりです。

ウォン確定送金(消費税対象外)

種類	送金金額	10万円以下	10万円超～30万円以下	30万円超～100万円以下
バロ送金手数料※1		500円	1,000円	1,500円

※1 バロ送金手数料は、1取引毎にかかります。

送金申込キャンセル手数料(消費税対象外)

ステータス	キャンセル手数料
入金確認中	無料
入金確認済み	バロ送金手数料分

返金に掛かる手数料(消費税を含む)

(a) 店頭以外の場合

返金口座(顧客口座)	返金金額	3万円未満	3万円以上
ジャパンネット銀行		54円	54円
ジャパンネット銀行以外		172円	270円

契約者の返金口座に送金する際差し引いて精算します。

(b) 店頭の場合

なし

※ 消費税の改定、金融機関の手数料の値上がり及び諸経費の値上がり等相当の理由があると当社が判断したときは、当社は手数料の改定を行うことができるものとします。

※ 送金資金を弊社指定口座へ振込時にかかる銀行の入金手数料や振込手数料は、利用者負担となります。

以上

2016年3月25日制定

2016年7月15日改定

바로송금 주요사항

바로송금의 신청 및 이용에 있어 다음 사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은행등에서 취급하는 외환거래가 아닙니다.

- 바로송금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외환거래가 아닙니다.
- 바로송금은 예금이나 저금 혹은 정기적금 등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 바로송금은 저금보험법 (쇼와 46 년 법률 제 34 호) 제 53 조 혹은 농수산업협동조합 저금보험법 (쇼와 48 년 법률 제 53 호) 제 55 조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당사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헤이세이 21 년 법률 제 59 호, 이하 “자금결제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동경법무국에 이행보험금을 공탁하고 있습니다.
- 바로송금 이용자는 자금결제법에 따라 이행보증금제도를 통해 보호됩니다.
- 바로송금 이용자는 자금결제법 제 59 조에 따른 이행보험금에 대한 권리 요청 수속에 있어, 수취인의 계좌에 송금완료될 때까지는 이용자(송금의뢰인)은 환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바로송금에 대해 유의해야할 기타 사항

- 바로송금의 이용에 있어, “이용약관” 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송금에서 취급하는 외환거래액의 상한(1 회 외환거래액)은 100 만엔 입니다.
- 입금하신 자금이 지정하신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될 때까지의 평균 소요시간은 1 영업일 입니다.
- 바로송금의 이용에 있어, 이용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통화간의 환율은 당사가 산정한 환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 환율 확정시점 및 적용 환율은, 송금신청자가 입력양식에 필요사항 입력등 창구에서 이용신청을 진행하는 시점의 당사가 공시하는 환율을 적용합니다.
- 회원등록 시에 회원카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안됩니다. 또한 카드 발행 시 인증번호를 등록하신 경우에는 회원 스스로 엄중히 관리하시어 제 3 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주소, 연락처 등, 이미 등록된 개인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당사에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 다시 한번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당사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서비스에 대한 불만 및 분쟁해결 신청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에 대한 불만 접수 및 상담:

주식회사 씨스퀘어 EC 사업개발부 바로송금 담당
160-0022 동경도 신주쿠구 신주쿠 1-36-7 신주쿠 우치노 빌딩Ⅱ 2층
TEL : 03-3359-0028
이메일:info@barosend.com

불만 해결 신청처:

사단법인 일본자금융결제업협회 고객상담실
동경도 치요다구 칸다 오가와마치 2-8
미즈이스미토모해상 오가와마치 빌딩 5층
TEL: 03-3219-0628

분쟁해결 신청처:

당사는 분쟁에 있어 일본자금융결제업협회가 업무를 위임하는 변호사회 (동경 변호사회, 제 1 동경변호사회, 제 2 동경변호사회)의 중재센터, 분쟁해결센터간 협정서를 체결하여 동회를 통해 분쟁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동경 변호사회 분쟁해결센터]

〒100-0013 동경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1-1-3 동경변호사회

TEL 03-3581-0031

[제 1 동경변호사회 중재센터]

〒100-0013 동경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1-1-3 제 1 동경변호사회

TEL 03-3595-8588

[제 2 동경변호사회 중재센터]

〒100-0013 동경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1-1-3 제 2 동경변호사회

TEL : 03-3581-2249

4. 외환거래가 외국통화로 표시된 금액으로 이루어질 경우, 해당금액을 일본엔화로 환산한 금액 및 그 환산에 이용한 표준 계산 방법 등

송금자금과 수취통화가 다를 경우, 본 서비스에서 적용되는 환율을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이용신청자가 입력 양식에 필수사항을 입력하는 등의 이용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의 한국 KEB하나은행이 정한 환율(TTS)에서, 0% ~ 5%를 가산하여 환율을 산출한 후, 적용합니다. 환율갱신은, 매일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수시로 갱신한다.

5. 기타

(1) 계약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2) 계약기간의 중도에 해약할 경우의 취급

· 중도해약 수수료(회원탈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 고객의 환불대상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고객의 지시에 따라 환불합니다.

· 개별적인 송금거래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송금신청을 취소한 경우, 별도의 정해진 취소수수료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외환거래에 관한 자금의 입금 방법

· 각 지점 창구에서 현금으로 지불

(4) 외환거래 의뢰이후, 해당거래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 고객님의께서 송금거래 진행 상황은 원칙적으로 고객님의 등록된 메일주소로 메일로 발송하거나 휴대전화로 SMS 를 발송하여 알려드립니다.

(5) 비밀번호의 설정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사항

- 바로송금을 이용함에 있어, 회원카드를 발행하시는 경우, 고객님의 직접 비밀번호를 설정하시고 등록하셔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당사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관리됩니다. 또한 비밀번호는 이용자의 책임하에 엄중히 관리,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본서비스 이용에 드는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 확정 송금(소비세 대상외)

송금 금액	10 만엔 이하	10 만엔 초과~100 만엔이하	30 만엔초과~100 만엔이하
BARO 송금수수료※1	500 엔	1,000 엔	1,500 엔

※1 BARO 송금수수료는 1 거래별로 발생합니다.

송금 신청 취소 수수료(소비세 대상외)

상태	취소 수수료
입금확인중	무료
입금확인 완료	BARO 송금 수수료분

환불에 드는 수수료(소비세 포함)

(a) 온라인 이용의 경우

환불계좌(고객 계좌)	3 만엔 미만	3 만엔 이상
재팬넷뱅크	54 엔	54 엔
재팬넷뱅크이외	172 엔	270 엔

계약자의 환불계좌에 송금하는 경우 상기 수수료를 제하고 정산합니다.

(b) 오프라인 창구 이용의 경우

수수료 없음

※ 당사는 소비세의 개정, 금융기관의 수수료 및 제 경비 인상이 있을 경우 수수료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송금자금을 폐사지정의 계좌에 입금할때 소요되는 은행의 입금 수수료는 이용자 부담입니다.

이상

2016년 3월 25일제정

2016년 7월 25일개정